

과학기술부고시의 신규 관리번호 부여체계 구축

Establishment of New Control Number System for Notices of MOST

안형준, 김종래, 오병주, 김상원, 장군현, 송재명, 정명모, 김효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19번지

강호성, 박영미
과학기술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요 약

현행 과학기술부고시의 관리번호는 발행년도와 일련번호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고시가 개정 될 때마다 고시번호가 개정되어 사용상 및 관리상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고시별로 고유의 관리번호를 신규로 부여하게 되었다. 과학기술부고시의 관리번호체계는 “과기.기술분야.일련번호”의 형식으로 구성하였으며, 과기는 과학기술부고시를 의미하고, 기술분야는 원자력법에 근거하여 총9개 분야로 구분하였으며, 일련번호는 해당고시의 최초 개발년도순으로 번호를 부여한 것이다. 신규의 고유 관리번호 부여체계에는 폐지된 고시, 개정 이전의 고시 등을 총 망라하였으며, 고시가 개정되어 고시번호는 바뀌더라도 관리번호는 일정하게 부여하여 관리 및 추적의 용이성을 도모하였다. 신규의 고유 관리번호 부여체계에 의한 고시 분류체계와 원문은 원자력안전기술원 홈페이지 (www.kins.re.kr)에서 “원자력관계법령”-“과학기술부고시”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 할 수 있다.

Abstract

Current control system of Notices of MOST is consists of issue year and the serial number. The change of the Notice numbers to new one in case of the revision gives users inconveniences. New Control Number System for Notices of the MOST has the form of "most . technical area . serial number" which means Notices of the MOST, nine specific technical area, and sequential number according to the initial issue date, respectively. The new system includes all the Notices: before- and after- revision, and deleted Notices. It also provides convenient way to use the Notices, because it has same control number for each Notice although the Notices have revision. The new system and full text can be seen and downloaded from the website (www.kins.re.kr) - "Nuclear Energy Laws"- "Notices".

1. 서 론

과학기술부고시는 원자력법령의 근거규정에 따라 원자력안전규제의 기술요건과 행정절차 등에

관하여 원자력법령을 보충하거나 규범을 구체화하는 행정규칙이다. 원자력시설의 건설 및 운영과 방사선 이용에 따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기술기준을 개발하고 이를 고시로 제정하여 규제업무와 원자력사업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시는 규제자에게는 명확한 규제판단의 기준을 제공하며, 사업자에게는 안전규제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다.

과학기술부고시 공포는 분야별 구분 및 개정횟수와는 무관하게 공포년도 및 재·개정 순서대로 단순 일련번호가 부여되고 있다. 이에 고시의 개정에 따라 고시번호가 변경되고 개정이력 추적과 인식의 어려움이 있어 이용자의 혼란과 불편함을 초래하여 왔다.

따라서, 고시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고시의 분류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즉, 현행 과학기술부 고시번호와는 별도로 각 고시를 기술분야별로 구분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개정현황 및 인식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을 과학기술부와 함께 추진하였다. 분야별 고유번호 부여방안은 현행 원자력법, 과학기술부령, 과기부고시, IAEA 안전기준, 미국의 경우 등을 비교·평가한 후 국내 실정에 적합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였다.

2. 고시 분류체계 평가 및 체계안 도출

가. 분류체계 평가

1) 원자력법 및 과학기술부고시

우리나라 원자력법은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문 13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고시제정과 관련되는 장은 표1에 나타난 바와 같이 9개 장이 해당된다. 원자력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표2와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구성은 원자력법의 장별 구성과는 일부 일치하지 않으나 그 내용은 서로 일관성이 유지됨을 알 수 있다.

한편 2002년에 안전기술원에서 발간한 원자력관계고시집에 따르면 현행고시를 6개 분야로 구분하여 분류하고 있다: 원자로시설, 방사선방호, 방사성폐기물, 방사성물질 운반, 방사선환경, 기타 교육·면허시험 등. 또한 기존 활용하였던 안전기술원의 고시 홈페이지의 분류에 따르면 8개 분야로 구분하여 분류하고 있다: 원자로, 핵주기, 방사선 방호, 방사성폐기물, 방사성물질 운반, 방사선 환경, 기타 교육·면허시험, 계량관리. 안전기술원 원규14-18 안전규제지침의 개발 및 인정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침의 분류를 6개 분야로 구분하고 있다: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연구용 및 시험용 원자로 포함), 핵연료주기시설 및 핵물질 사용 (정련/변환 및 가공/사용후핵연료처리), 방사선 방호(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 발생장치 /업무대행/방사선 기기제작/방사선 피폭 관독, 방사선 방호, 비상대책 및 환경방사능), 방사성폐기물 폐기(고준위/중·저준위/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 운반·포장·특수형방사성 물질, 기타 안전규제에 필요한 사항(교육훈련 및 면허시험관리 포함).

위에서 언급한 원자력법령집, 고시집, 홈페이지, 원규의 고시분류체계를 서로 비교하면 표3과 같다. 고시집, 홈페이지, 원규의 분류체계는 유사하며, 이와 법령체계를 비교해 볼 때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법령체계에서는 면허 및 시험, 규제 감독, 보칙으로 상세히 구분되어 있다.

2) IAEA

종합적인 IAEA 안전기준체계는 표4와 같이 모든 원자력시설 및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안전을 비롯하여 원자력안전, 방사선안전, 방사성폐기물 안전, 운반안전의 5개 분야로 구성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IAEA 안전기준은 기존의 단순 분야별 구분에서 주제별(Thematic) 및 시설별(Facility specific) 매트릭스 형태의 기준체계로 변화를 보이고 있다.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 분야(법률 및 정부 기반구조, 비상대책 및 대응, 관리체계, 안전성평가, 원자력발전소 부지평가, 방사선안전, 방사성폐기물 관리, 해체, 오염지역 복원, 운반)의 주제별 구분과 시설별 6분야(원자력발전소 설계, 원자력발전소 운영, 연구로,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선 및 관계시설, 폐기물처분시설)의

체계를 구성하여 모든 기준이 서로 유기적으로 관계되어 종합적으로 개발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3) 미국

미국의 기술기준체계는 10 CFR, 표준심사지침(SRP), 규제지침(Regulatory Guide)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규제지침이 기술분야별로 비교적 잘 분류되어 있다. 규제지침의 기술분류 체계는 표6과 같이 발전용원자로 등 10개 분야로 분류되어 있다.

표1. 원자력법의 구성 및 고시관련 장

원자력법	영 문	기술분야
제1장 총칙	I. General Provision	
제2장 원자력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II. Atomic Energy Commission and Atomic Energy Safety Commission	
제3장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 이행 및 원자력의 연구 개발등	III. Establishment and Execution of Comprehensive Nuclear Energy Promotion Plan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etc. of Nuclear Energy	
제4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운영 제1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제2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 제3절 연구용원자로등의 건설 운영	IV.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Nuclear Reactor and Related Facilities	○
제5장 삭제	V. - deleted -	
제6장 핵연료주기사업 및 핵물질사용등 제1절 핵연료주기사업 제2절 핵물질사용	VI. Nuclear Fuel Cycling Enterprise and Use of Nuclear Materials	○
제7장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VII. Radioactive Isotope and Radiation Generating Devices	○
제8장 폐기 및 운반	VIII. Disposal and Transport	○
제9장 방사선피폭선량의 관독등	IX. Dosimeter Reading Service	○
제10장 면허 및 시험	X. License and Examination	○
제11장 규제·감독	XI. Regulation and Supervision	○
제12장 보칙	XII. Supplementary Program	○
제13장 벌칙	XIII. Penal Provisions	○

표2. 원자력법, 령, 규칙의 상관관계

원자력법	시행령	시행규칙	비 고
제4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운영 ○ 제1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 제2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 ○ 제3절 연구용원자로등의 건설 운영	제3장 원자로의 관리 운영 ○ 제1절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운영 - 제1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 제2관 연구용등 원자로시설 ○ 제2절 삭제 - 제3관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등	[원자로규칙] 제2장 원자로시설의 기술기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제6장 핵연료주기사업 및 핵물질사용등 ○ 제1절 핵연료주기사업 ○ 제2절 핵물질사용	제4장 핵연료주기시설 및 핵물질 사용 ○ 제1절 핵연료주기시설 ○ 제2절 삭제 - 제5관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등 ○ 제3절 핵물질의 사용등	제3장 핵연료주기시설의 기술기준 [방사선규칙] 제2장 핵물질의 사용	핵연료주기시설 핵물질의 사용
제7장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제8장 폐기 및 운반 제9장 방사선피폭선량의 판독등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등·방사성 폐기물 및 방사성물질의 관리 ○ 제1절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 이동사용 및 판매 ○ 제2절 폐기시설등의 건설 운영 등 ○ 제3절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 제7장 방사선안전관리	제3장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제4장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 제5장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의 안전관리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성폐기물 포장/운반
제10장 면허 및 시험	제6장 원자력관계종사자의 면허 및 교육		기타
제11장 규제 감독			
제12장 보칙			
제13장 벌칙			

표3. 원자력법령집 및 고시집 등에서의 고시분류체계

원자력법	원자력관계 고시집	고시 홈페이지	안전규제지침 인정절차
제4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운영	1. 원자로시설 관련 고시 5. 방사선환경 관련 고시	1. 원자로 분야 6. 방사선환경 분야	1.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제6장 핵연료주기사업 및 핵물질사용등	(현행 해당고시 없음)	2. 핵주기 분야	2. 핵연료주기시설 및 핵물질 사용
제7장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제9장 방사선피폭선량의 판독등	2. 방사선방호 관련 고시	3. 방사선 방호 분야	3. 방사선 방호
제8장 폐기 및 운반	3. 방사성폐기물 관련 고시 4. 방사성물질 운반 관련 고시	4. 방사성폐기물 분야 5. 방사성물질 운반 분야	4. 방사성폐기물 폐기 5. 운반·포장·특수형 방사성물질
제10장 면허 및 시험 제11장 규제 감독 제12장 보칙 제13장 벌칙	6. 기타 교육, 면허시험 등 관련 고시	7. 기타 교육, 면허시험 분야 8. 계량관리 분야	6. 기타 안전규제에 필요한 사항

표4. IAEA 안전기준 체계에 의한 분류

대분류	중분류
General Safety	1. Safety Fundamental
	2. Legal and Governmental Infrastructure
	3.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
	4. Quality Assurance
Nuclear Safety	1. Design of Nuclear Power Plants
	2. Operation of Nuclear Power Plants
	3. Site Evaluation for Nuclear Power Plants
	4. Research Reactors
	5. Fuel Cycle Facilities
Radiation Safety	No sub category
Radioactive Waste Safety	1. Infrastructure
	2. Pre-disposal
	3. Disposal
	4. Rehabilitation
Transport Safety	No sub category

표5. IAEA 안전기준 체계 개편방향

Thematic Standards	Facility specific Standards
I. Legal and Governmental Infrastructure	A. Design of Nuclear Power Plants
II. Emergency Preparedness & Response	B. Operation of Nuclear power plants
III. Management Systems (replacing QA)	C. Research Reactors
IV. Assessment and Verification	D. Fuel Cycle Facilities
V. Site Evaluation	E. Radiation Related Facilities & Activities
VI. Radiation Protection	F. Waste Treatment and Disposal Facilities
VII.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VIII. Decommissioning	
IX. Rehabilitation of Contaminated Areas	
X. Transport of Radioactive Material	

표6. 규제지침에 의한 기술분류

번호	분 야	비 고
1	o Power Reactors	발전용 원자로
2	o Research and Test Reactors	연구·시험용 원자로
3	o Fuels and Materials Facilities	핵연료주기시설
4	o Environmental and Siting	부지 및 환경
5	o Materials and Plant Protection	핵물질 및 물리적방어
6	o Products	생산
7	o Transportation	방사성물질의 운반
8	o Occupational Health	보건물리
9	o Antitrust and Financial Review	반독점 및 재정
10	o General	일반사항

나. 분류체계안 도출

과학기술부고시를 분류할 때 통상 원자로시설분야와 방사선안전분야로 구분한다. 이는 분류의 단순성 및 편의성과 아울러 과학기술부령인 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과 방사선안전관리 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의 구분과도 일치한다. 위에서 조사한 원자력법, 고시집, 홈페이지, 원규의 분류, IAEA 및 미국 등의 분류를 상호 비교해 보면 표7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가지의 안을 도출하였고 이를 관계기관과 협의 및 분석하여 최종 안을 도출하였다. 3가지 안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 제1안 : 원자력법을 기준으로 분류(표8)
- 제2안 : 전문기술 분야를 기준으로 분류(표9)
- 제3안 : 전문기술 분야를 고려하되 간단하게 분류(표10)

3가지 안의 특성과 장단점을 비교하면 표11과 같다. 제1안은 원자력법을 기준으로 하므로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는 반면 실제적으로 전문 기술분야와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다. 제2안은 전문기술분야로 분류하여 내용상 타당성은 있으나 분류가 세분화되는 경향이 있다. 제3안은 인식을 용이하게 하며 단순한 분류를 하여 편리한 점이 있는 반면 같은 분류안에 서로 상이한 성격의 고시가 포함될 수 있다.

표7. 고시의 고유번호 부여방안 비교

분 류		원자력법	고시집	IAEA	과학기술부령	Reg. Guide
원자로	발전용원자로	원자로 및 관계시설	원자로시설	원자력	원자로기술 기준 규칙	R.G.1.01
	부지환경					R.G.4.01
	연구용원자로	방사선환경	R.G.2.01			
	핵주기		핵주기사업 및 핵물질사용			R.G.3.01
방사선	방사성폐기물	폐기 및 운반	방사성폐기물	폐기물	방사선기술 기준 규칙	R.G.1.01 R.G.4.01
	방사선방호	방사선피폭선량판독	방사선방호	방사선		R.G.8.01 R.G.6.01
	방사성물질운반	방사성동위원소등	방사성물질운반	운반		R.G.7.01
	안전조치	규제 및 감독	(계량관리)			R.G.5.01
일반	교육훈련, 면허	면허및시험, 보칙, 벌칙	기타 교육 등	일반	과기부령	R.G.10.01

3. 관리번호 부여체계 수립

가. 관리번호 부여방안 추진경과

과학기술부고시의 관리체계 개선은 2000년도부터 논의되고 세미나 등을 통하여 홍보하였으며 보고서에도 수록된 바 있다. 주요 추진경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 2000.6.30, KINS/PR-006 원자력기술기준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세미나, KINS, "과학기술부 고시 고유번호 부여방안"
- 2000.12, KINS/ER-030 Vol. 기술기준 개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p.38 "제2절 고시의 고유번호 부여방안"
- 2003.1~3, 과기부와 협의, 관리번호 부여안 제시
- 2003.2.17~2003.2.28, 안전기술원 간부회의 보고
- 2003.3.27, 제24차 원자력안전위원회 보고 제3호 안전 "원자력안전 기술기준 개발계획"중 "안전 규제기준 관리체계 개선" 보고
- 2003.4.29, 안전기술원 제2003-2차 기준·연구전문분과(위), 과학기술부고시 분류체계 수립방안 보고
- 2003.5.13, 관리번호 부여 및 관리방안 시행
 - 원안71230-402, 원자로안전관련 과학기술부고시 관리번호 부여 및 관리방안 송부

표8. 고시 분류체계안-제1안

관리번호	원자력법의 장	원자력법의 절	비 고
원자-01(R-01)	제4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운영	제1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제2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 제3절 연구용원자로등의 건설 운영	
핵주-01(F-01)	제6장 핵연료주기사업 및 핵물질 사용등	제1절 핵연료주기사업 제2절 핵물질사용	
방사-01(R-01)	제7장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 발생장치	(절 구분 없음)	
폐기-01(W-01)	제8장 폐기 및 운반	(절 구분 없음)	
선량-01(D-01)	제9장 방사선피폭선량의 관독등	(절 구분 없음)	
면허-01(L-01)	제10장 면허 및 시험	(절 구분 없음)	
규제-01(R-01)	제11장 규제 · 감독	(절 구분 없음)	
보칙-01(S-01)	제12장 보칙	(절 구분 없음)	
벌칙-01(P-01)	제13장 벌칙	(절 구분 없음)	

표9. 고시 분류체계안-제2안

관리번호	구 분	적 용 분 야	비 고
원자-01 (R-01)	원자로시설 Reactor Facilities	발전용, 연구용, 교육용 원자로	
핵주-01 (F-01)	핵주기시설 Fuel Cycle Facilities	정련, 변환, 가공, 사용후핵연료 처리	
환경-01 (E-01)	부지환경 Siting & Environmental	부지 및 환경영향 평가	
방호-01 (P-01)	방사선방호 Radiation Protection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방사선피폭, 비상대책	
폐기-01 (W-01)	방사성폐기물 Radwaste	방사성폐기물,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운반-01 (T-01)	포장 및 운반 Transport	방사성물질 포장 및 운반	
기타-01 (X-01)	기타 training, etc	면허, 교육 훈련, 계량관리, 물리적 방호 등	

표10. 고시 분류체계안-제3안

관리번호	구 분	적 용 분 야	비 고
시설-01 (F-01)	원자력이용시설 Nuclear Power Utilization Facilities	영 제9조의2에 규정된 모든 시설과 관련된 고시	
방호-01 (P-01)	방사선방호 Radiation Protection	방사선방호를 위한 제반 행위와 관련된 고시	
물질-01 (M-01)	방사성물질 등 Radwaste	방사성물질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모든 물질과 관련 된 고시	
기타-01 (X-01)	기타 training, etc	종사자 교육, 면허시험, 계량관리 등	

표11. 고시 분류체계 3개 안의 상호 비교

	특성	장 점	단 점	비 고
제1안 (9)	원자력법의 장을 기본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을 기준으로 하므로 객관적 타당성이 있음. • 과기부고시는 법령에 근거하여 제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분야의 구분과는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음. • 분류가 너무 세분화 되며 현재 해당고시가 없는 분야가 있음(예, 벌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력법(9) • 미국 Reg.Guide (10)
제2안 (7)	고시내용상의 기술분야로 분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고시 분류를 참고하여 전문기술 분야로 분류하므로 기술적으로 타당함. • 아직 미개발된 분야 또는 폐지된 분야도 추후 개발을 고려하여 분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분야는 고시 건수가 없어서 분류의 의미가 적음(예, 핵주기시설). • 분류가 세분화되므로 고시 분류에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시(6), 홈페이지(8), 지침인정절차(6) • 미국 Reg.Guide (10)
제3안 (4)	원자로, 방사선 등 최소한으로 구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원자로규칙 및 방사선규칙(부령)을 기본으로 함 (고시의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대부분 부령임). • 분류를 단순화함으로써 검색 및 인지가 용이함. • 고시의 건수가 총 100여건 정도임을 감안할 때 4개 정도로 분류하여도 무리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분류안에 다른 성격의 고시가 일부 포함될 수 있음(예, “원자력시설의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시설”에 포함). • 현행 고시집 및 홈페이지 개편 필요. • 지침인정 규정의 분류체계 개정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령(3) • IAEA(5)

* 괄호안의 숫자는 분류 개수 임.

나. 관리번호 부여체계의 구성

앞 절에서 논의한 3가지 안에 대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결과, 과기부고시가 법령에 근거하여 개발되기 때문에 법을 근거로 분류한 제1안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또한 2003년 3월 27일 개최된 제24차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된 사항과 동일한 것이다. 관리번호체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고시의 관리번호 부여 : 과학기술부고시에 관리번호를 신규로 부여하여 고시의 개정이력, 과거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고시의 활용편의성 제고
 - 표기형식 : 고시번호 → 고시번호(관리번호) (표12참조)
 - 고시의 관리번호 구성요소 중 “기술분야”는 원자력법의 장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원칙에 따라 표13과 같이 부여함.
- 고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 고시별 과거 제·개정 이력, 고시내용, 개정횟수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
 - 고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표14와 같이 관리번호, 고시명, 고시번호, 개정, 제·개정일자, 비고 등으로 구성함.
 - 폐지된 고시를 합하여 지금까지 개발된 총 고시건수는 88건이며 현재 유효한 고시는 71건임.

신규의 고유 관리번호 부여체계에는 폐지된 고시, 신규제정 고시, 개정 전후의 고시 등을 총 망라하였으며, 고시가 개정되어 고시번호는 바뀌더라도 관리번호는 일정하게 부여하여 관리 및 추적의 용이성을 도모하였다.

표12. 고시 관리번호 부여체계

	표기형식	설 명
종전	고시번호 : 과학기술부고시 제aaaa-bb호 예) 과학기술부고시 제2003-19호	* aaaa : 제·개정 년도 * bb : 과기부내 고시, 규정 등의 부여 일련 번호
신규	고시번호(관리번호) : 과학기술부고시 제aaaa-bb호 (과기.기술분야.일련번호) 예) 과학기술부고시 제2003-19호 (과기.원자로.031)	* 과기 : 과학기술부고시 * 기술분야 : 원자로, 방사선, 폐기물, 선량, 면허, 규제, 보칙 * 일련번호 : 고시의 최초 제정일 순서로 부여

표13. 관리번호의 기술분야 분류

구 분 (주1)	영 문	약 어	적 용 분 야
원자로 및 관계시설 (4)	Nuclear Reactors and Related Facilities	원자로	발전용, 연구용 및 시험용 원자로, 주기적안전성평가, 해체
핵연료주기사업 및 핵물질사용 (6)	Nuclear Fuel Cycle and Nuclear Materials	핵물질	핵연료주기사업 및 핵연료물질 사용허가, 핵연료 물질의 사용신고 등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7)	Radioisotope and Radiation Generator	방사선	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 및 신고, 생산·판매·사용 또는 이동사용허가 등
폐기 및 운반 (8)	Disposal and Transport	폐기물	폐기시설, 폐기물 처분제한, 포장 및 운반
방사선피폭선량의 관독 (9)	Radiation Dosimetry	선 량	관독업무자의 등록, 검사, 취소, 피폭관리, 방사선장해방지 등
면허 및 시험 (10)	License and Examination	면 허	면허의 시험, 취소, 면허증,교육훈련 등
규제 및 감독 (11)	Regulation and Supervision	규 제	취급제한, 도난의 신고, 보고, 계량관리 등
보 칙 (12)	Supplementary Regulation	보 칙	청문, 주민의견 수렴, 환경보전, 수출입 절차, 권한의 위탁 등
벌 칙 (13)	Penal Provisions	벌 칙	벌칙 및 과태료, 양벌규정, 공무원 의제

(주1) 괄호안의 숫자는 원자력법의 장(章)을 나타냄.

제1장 총칙

제2장 원자력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제3장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 이행 및 원자력의 연구개발 등

제5장 (삭제)

표14. 과기부고시 데이터베이스 작성 양식(예)

관리번호	고시명	고시번호	개정	제·개정일자	비고 (법적근거, 변경등)
과기.원자로.005	원자로 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	84-07	0	84.06.22	'00.6.23 폐지 (‘00.6월 원자력법시행규칙에 이관)
		86-09	1	86.04.01	
		94-09	2	94.02.07	
		98-06	3	98.06.27	
과기.원자로.014	원자로 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	92-20	0	92.12.09	원자로 제21조 제4항 및 제63조 제1항
		00-15	1	00.12.29	
		03-03	2	03.04.11	
과기.방사선.001	방사선량 등에 관한 규정 방사선량 등을 정하는 규정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규정	84-02	0	84.02.29	법 제2조 제19호 등
		90-11	1	90.10.05	
		93-02	2	93.04.15	
		94-07	3	94.01.10	
		96-35	4	96.09.09	
		98-12	5	98.08.18	
		01-02	6	01.01.31	
		02-01	7	02.01.03	
02-23	8	03.01.06			

다. 웹사이트 구축

새롭게 구축한 고시의 관리번호 부여체계 및 데이터베이스는 안전기술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웹사이트 주소는 원자력안전기술원 홈페이지 (www.kins.re.kr)에서 “원자력관계법령”-“과학기술부고시”이다. 그림1은 웹사이트의 내용중 고시의 분류를 보여주는 화면이며, 그림2는 관리번호별 고시의 목록을 나타낸다. 여기에서 한글 아이콘을 클릭하면 한글을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고시번호를 클릭하면 html 파일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4. 결론

과학기술부고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신규의 고유 관리번호 부여체계를 수립하여 과학기술부와 함께 시행토록 하고 있다. 신규 고유 관리번호 부여체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과학기술부고시의 관리번호체계는 “과기.기술분야.일련번호”의 형식으로 구성하였으며, 과기는 과학기술부고시를 의미하고, 기술분야는 원자력법에 근거하여 총9개 분야로 구분하였으며, 이들은 원자로, 핵물질, 방사선, 폐기물, 선량, 면허, 규제, 보칙, 벌칙이다. 일련번호는 해당고시의 최초 개발년도순으로 번호를 부여한 것이다.
- 나. 신규의 고유 관리번호 부여체계에는 폐지된 고시, 신규제정 고시, 개정 전후의 고시 등을 총망라하였으며, 고시가 개정되어 고시번호는 바뀌더라도 관리번호는 일정하게 부여하여 관리 및 추적의 용이성을 도모하였다.
- 다. 신규의 고유 관리번호 부여체계에 의한 고시 분류체계와 원문은 원자력안전기술원 홈페이지 (www.kins.re.kr)에서 “원자력관계법령”-“과학기술부고시”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이 웹사이트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고시의 제·개정 이력 추적이 용이하며, 안전규제 업무의 효율화 및 간소화를 도모하고 원자력사업자의 고시활용 편의성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1. 원자력관계법령집, 200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 원자력관계고시집, 200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 원규 14-18 안전규제지침의 개발 및 인정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 2002.9.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 KINS/ER-030 Vol.1 기술기준개발, 2000.1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5. KINS/RR-107 원자력안전규제 기술요건체계 분석, 2002.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6. Status of IAEA Safety Standards Program, IAEA, December 2003.
7. USNRC homepage <http://www.nrc.gov/reading-rm/doc-collections/reg-guides/>.

그림1. 과학기술부고시 웹구축 화면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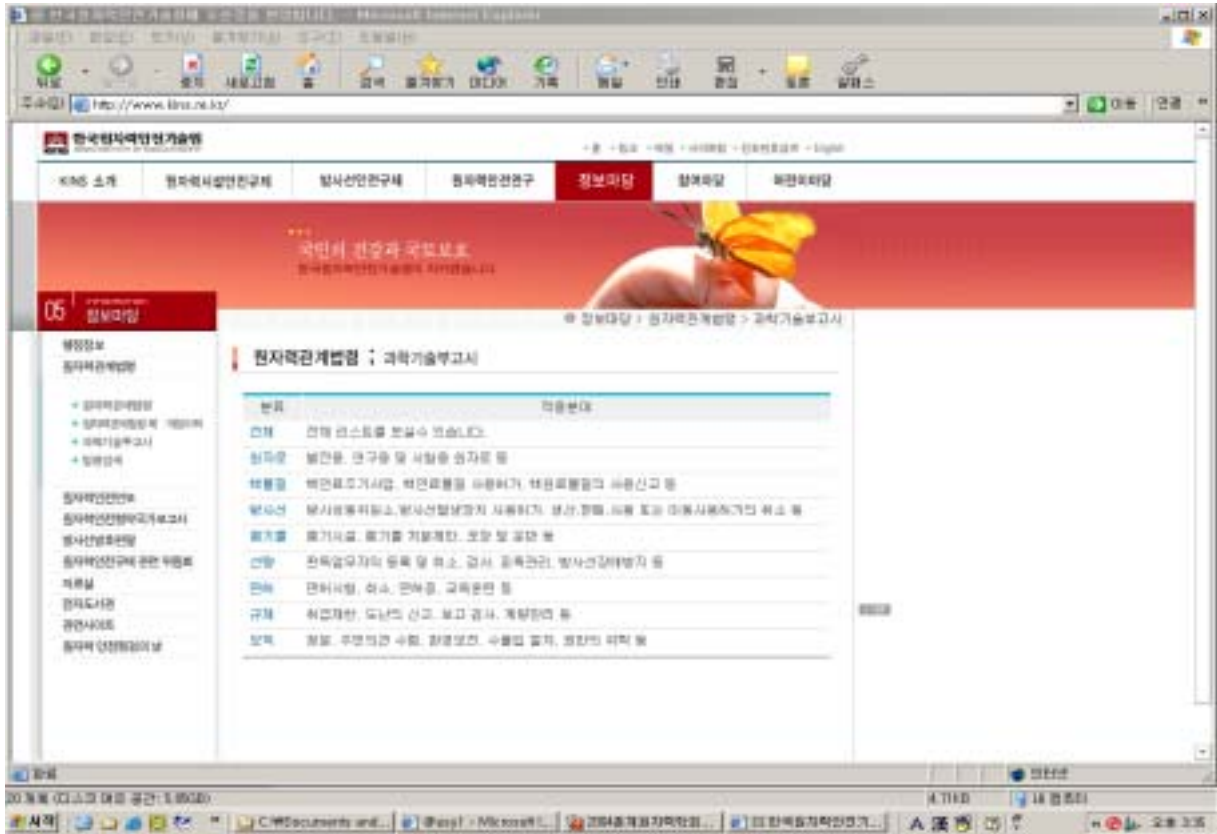


그림2. 과학기술부고시 웹구축 화면2

